

《2022. 2월 1차》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신년화두 慎終謀始 (신종모시)

『맏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직무 공정성 확보”

관 련 내 용

(관련지침)

-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함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정치인, 정당의 범위)

- 정 치 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 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 당 :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정치자금법」 제3조)

예 시

○ 지방의회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지방의회의원의 부당한 청탁

-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 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B의원이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수수함

부조리
신고

-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



클릭, 케이위슬 연결